

제257회 임시회
2007. 2. 22.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회 운영 위원회
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7년 2월 22일

○ 상정일자 : 제257회 임시회

2007년 2월 22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

○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·삭제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일비조정

○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,000원에서 20,000원으로 조정함.(안 별표 1)

나. 용어정정 및 삭제

○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함.(안 제6조)

○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“의원”란 해당부분 전체와 “구분”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

○ 별표 1과 별표 2의 비고 중 1을 각각 삭제(안 별표 1, 별표 2)

○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“철도운임”란 해당부분 전체와 “선박운임”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(안 별표 2)

5. 검토의견

○ 금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를 1일당 10,000원에서 20,000원으로

조정하는 것은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7의 “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”에 부합하므로 타당하고

-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하는 것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합당하며
- 별표 1의 “국내여비지급기준표” 중 의원란과 구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의장·부의장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금액이 동일하여 구분이 무의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별표 1 “국내여비지급기준표”의 비고 “1. 의회소재지내의 여행(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”를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 “제6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 출장여비지급)”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
- 별표 2 “국외여비지급기준표”의 비고 “1.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.”를 삭제하는 것은 “국외여비지급기준표”의 지급금액이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4에 의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
- 별표 2 “국외여비지급기준표” 중 “철도운임”란과 “선박운임”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8의 “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지급기준”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 동 조례 제7조 준용규정에 따라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여비중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을 준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